

PLAN 03

AEO(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) 자율검증 지원

- 자율검증 결과물 전문가(관세사 등) 확인을 거쳐 제출시,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서류심사 전환

PLAN 04

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확대

-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
- 사전심사 기업은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 지원

PLAN 05

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혜택 및정보제공 확대

- 자율검증 기간 기존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
-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조기 점검 정보 제공

PLAN 06

성실신고·품목분류 가이드북 발간

-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유의사항 및 최신 법령·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「성실신고 가이드북」 제공
- 통상정책 변화 대응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가이드북 발간 (K-뷰티 등)

전국 세관
[관세 안심 플랜] 문의처

- 관세청 심사정책과 Tel. 042. 481. 7862
- 인천공항세관 심사정책과 Tel. 032. 722. 4350
-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Tel. 02. 510. 1213
-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Tel. 051. 620. 6312
-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Tel. 052. 452. 3312
-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Tel. 053. 230. 5315
- 광주세관 심사과 Tel. 062. 975. 8171
- 방목세관 심사과 Tel. 031. 8054. 7171
-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Tel. 042. 714. 7508

성실신고 가이드북

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북으로 기업들이 실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▶ 활용방법

관세청 홈페이지 및 교보문고 e-Book
관세청 홈페이지 ▶ 알림 소식 ▶ 통합자료실 ▶ 자료실

▶ 문의처

관세청 심사정책과 T. 042-481-7862

품목분류 가이드북

복잡한 품목분류(HS)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 발간하여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▶ 주요 가이드북

다스플래이

반도체

2차전지

자동차 부품

K-뷰티

▶ 활용방법

관세법령정보포털(CLIP)을 통해 확인
관세법령정보포털 ▶ 세계-HS ▶ HS가이드

▶ 문의처

관세청 세원심사과 T. 042-481-7738

“사전점검은 꼼꼼하게,
경영 위험은 제로(Zero)로!”

우리기업의 든든한 버팀목

관세
안심
플랜

[관세 안심 플랜]은
간헐스러운 관세 추정 등으로 인한
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.
이제 관세 리스크 걱정 없이 안심하고
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세요.

[관세 안심 플랜]이란?

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, **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**를 제공 한다는 의미입니다.

[관세 안심 플랜] 지원내용

PLAN 01

품목분류 Fast-Track 확대 및 시제품 심사 활성화

-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조기 품목 확정
-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확대
-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 신고시 가산세(10%) 면제

PLAN 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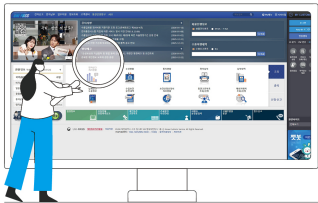
ACVA(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) 기업 경영 지원

- ACVA 결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관세 조사 대상에서 제외
-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

() (1).jpg
(4677 X 2480)

기업 경영의 안심 시작, 관세청 예방적 사전점검 제도

관세청은 기업이 스스로 **납세 오류를 점검**하고 **사후 추징의 불안을**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품목분류(HS) 사전심사 제도

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**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** 수출입신고전에 관세청장(관세평가분류원장)에게 질의하여 회답을 받는 제도로 **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정**할 수 있습니다.

- 신청방법: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해 신청, 분석대상 물품인 경우 수수료 3만원/건당



- 문의처: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T.042-714-7535

※ 사전심사의 효력은 사전심사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하며, 그 이전에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과세가격(ACVA)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

납세자가 수입물품의 **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**, 가격 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(관세평가분류원장)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**특수관계 사전심사(ACVA)**와 **일반 사전심사**가 있습니다.



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**과세가격결정방법**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관인을 통해 **사전에 결정**해 주는 제도



제1방법의 가산비용, 공제요소, 거래가격 배제요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거나, **제1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**해야 하는 경우 **사전에 이를 심사**해 주는 제도

- 신청방법: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해 신청



- 문의처: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T.042-714-7508

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) 제도

법규 준수도와 안전관리 수준을 **공인받은 기업**에게 신속 통관, 관세조사 면제 등 **다양한 혜택**을 제공하고, AEO 시행국과 **상호인정협정(MRA)**이 체결된 국가에서도 감사율 축소와 같은 **신속 통관 편의**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.

- 신청방법: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해 신청



- 문의처: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042-714-7572

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**소요량 계산 방식**을 **사전에 심사**받아 정확한 환급을 보장받고 **추징을 조기 예방**합니다.

- 신청방법: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해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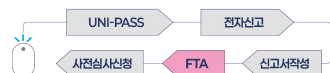


- 문의처: 관세청 세원심사과 T.042-481-7873

원산지 사전심사 제도

수입하는 물품의 FTA 특혜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**원산지 충족 여부**를 **수입신고 전**에 관세청에 신청하여 **확인**받는 제도로 **사후 원산지 불인정**으로 인한 불이익을 **방지**할 수 있습니다.

- 신청방법: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해 신청



- 문의처: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T.042-481-3287

※ 모든 FTA 협정에 대해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.



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

관세청이 분석한 기업별 납세 **오류 위험 정보**를 **사전에 제공**받아 기업 스스로 **오류를 수정**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자율열람

기업이 **UNI-PASS**에 접속하여 **납세신고도움정보**를 **수시로 열람**하여 활용(분기별 업데이트)



개별정보

세관이 추가적인 정보분석으로 납세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특정하여 **수입자에게 제공**, 수입자는 30일(최대 120일) 이내에 **‘납세오류 점검 결과’**를 **세관에 제출**



- 활용방법: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해 조회



- 문의처: 관세청 심사정책과 T.042-481-7863



() (1).jpg
(4677 X 2480)